

제30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
제1차 본회의, 2024.08.27.(화) 10:00

「고령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」

검 토 보 고 서



전 문 위 원

「고령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」 검 토 보 고

1. 제 안 자 : 김명국 의원 대표발의

2. 제안이유

-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- 다.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라. 재정 지원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, 제6조)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실종자의 수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수색활동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명시함으로써, 수색대원의 복리보장 및 신속한 수색작업을 통해 실종자의 수색 기간을 단축하여,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

「고령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[참고] 경상북도 내 관련 조례 제·개정 현황

2024. 8. 기준

연번	시군	자치법규명	비고
1	경상북도	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	
2	청도군	청도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	